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8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시행	8
2.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 협의체 구성·운영	11
※ 참고자료	
1. 학교안전법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관련 조문	14
2. 유사 실태조사 관련 조문	16
3. 유사 협의체 관련 조문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5.

다. 회 부 일 : 2024.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함.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

폐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재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항).

라.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항).

마.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② 3년마다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효과적인

현행	개정안
	<u>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u> <u>④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⑤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⑥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⑦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효과성 평가의 절차·방법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023년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207.1%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

(단위: 명,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세 이하 마약사범 수	239	313	450	481	1,477
전년대비 증가율	-	31.0	43.8	6.9	207.1

자료: 「2023 마약류 범죄백서」 170p,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토대로 재구성

이러한 아동·청소년 마약 투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교보건법」¹⁾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43.2% 수준으로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중고생 약 11,320명 대상) >

교육 경험	예방 교육 구분			
	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있음	61.0%	86.9%	43.2%	35.9%
없음	39.0%	13.1%	56.8%	64.1%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88.5%가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꼽은 비율이 50%로 다른 항목 대비 가장 높았으며,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4%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이하 응답자의 경우 94.3%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²⁾.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에 마약 예방 교육시간을 명시하여 최소한 교육시간을 확보하며, 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교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음.

1.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시행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9조의3제1항), 해당 계획에 따라 전문인력이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 본문).

개정안은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

2)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국민 절반 요청, 2023.8.25.

문인력이 예방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마약중독 예방교육은 기존의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2항 후문) 법정 교육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안 제3항)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 예방을 내용으로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 따라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³⁾,

이를 기존에는 내용 구분 없이 총 10시간 실시하였으나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부터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을 구분하여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함으로써 최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과의 정합성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0.16.) >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 실시시간 :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자료: 교육부, 「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3) 참고자료1 “학교안전법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관련 조문” 참조.

또한, 개정안과 같이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전문인력이 전담하도록 한 조치는 예방교육 내용적 측면의 전문성에는 이점이 있을 것이나, 학생 교육은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또한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일부수정 -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안 제1항),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계할 수 있는 교육에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교육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2항). - 다만, 현재 학교별 담당 교원이 학생 발달 상황에 맞게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는 필요시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법무부에서 양성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24년 기준 약 20,000회), 모든 예방교육을 전문인력이 수행하기보다는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함(안 제2, 3항).
○ 시·도교육청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신중검토 - 마약류 예방교육은 이미 학교안전법 등에서 교육시간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 학생의 교육은 발달 단계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인력 활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신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함. (서울, 경북, 경남): 일부수정 -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찬성하나, 예방교육을 반드시 외부 전문인력이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보건교사회: 신중검토 - 필요시 얼마든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음(학교안전법 제8조 3항, 4항).
○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마약중독 예방교육 전담 전문인력이 국가공무원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 제8조에 따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 협의체 구성·운영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4, 5항),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6항).

개정안은 보건교육의 실시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보건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이고 근거 기반의 예방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또한 협의체를 통해 예방교육 정책에 대해 다각적 검토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하여 기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법에서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 이들 실태조사를 개선하여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방안과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4) 참고자료2 유사 실태조사 관련 조문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교육, 홍보 등을 협의·조정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⁵⁾ 유사·중복 협의체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200만원(연평균 3,2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음⁶⁾.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 (안 제9조의3제4항)	81	—	—	81	—	162	32.4

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류 예방 교육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 성격의 실태조사를 부처별로 실시할 경우 관련 정책 수립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는 학교 현자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안 제4항).

5) 참고자료3 유사 협의체 관련 조문

6) 추계번호: 24C3663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하부 조직으로 예방·교육·홍보분과를 두고 있으므로, 기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예방교육 정책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6항).
○ 시·도교육청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서울, 경북): 신중검토 - 별도 추진계획, 실태조사, 효과성 평가 등은 학교 행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교육적 가치보다는 절차와 형식에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교사회: 신중검토 -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부담과 중복된 법령 개정이 아닌, 교육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1

학교안전법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관련 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대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발체

구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시간	유치원	5	5
	초등학교	5	5
	중학교	6	4
	고등학교	7	3
횟수		학기 당 2회 이상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발췌

구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유치원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초등학교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중학교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고등학교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에 대한 인식·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예방·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학계·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사·단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2. 치료·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3. 예방·교육·홍보실무분과협의회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